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모집등록 단체들의 기부금 “수입과 세부지출내역”을 기부자와 국민들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기부단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모집단체가 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서식 (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)등을 변경(안 별지 제8호 서식)

- 총모집과 사용액 등 단순 기재하던 것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상세하고 공개되도록 연월일, 지급처명, 사업내용, 비목 입력란으로 서식 항목을 변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5호의2서식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”을 “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”을 “별지 제5호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별지 제8호서식”을 “별지 제7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본문 중 “별지 제9호서식”을 “별지 제8호서식”으로 한다.
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6호서식(종전의 별지 제5호의2서식)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(종전의 제8호서식)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8호7서식(종전의 제9호서식)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서식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기부금품 모집 명세서

(단위: 원)

[illegible]

비고

1. 모집자는 위 서식 장부를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.
2. 이 장부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통장 등과 합본할 수 있습니다.
3. 모집종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집종사자별로 색인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.
4. 금액란에는 기부자로부터 모집한 금액이나 예금이자 등을 적어야 합니다.
5. 익명(비실명) 기부자의 경우 기부자 명란에 계좌번호, 발송자주소, 모금장소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.
6. 접수방법은 “온라인(계좌, 정보통신망, ARS 등), 오프라인(현장접수, 모금함 등), 기타” 중에서 기재합니다.

기부금품 지출 명세서

(단위: 원)

[illegible]

비고

- 1) 모집자는 위 서식 장부를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.
- 2) 기부금품 등록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는 사용계획서 상의 사업명과 모집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- 3) 사업명을 기재하는 경우 지출목적(사업내용)을 기재하고, 모집비용일 경우 아래의 비목을 기재합니다.

* 비목 구분

인건비	임차비	홍보비	세금과공과	소모품비	지급수수료	기타(일반운영비)
-----	-----	-----	-------	------	-----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

등록번호			
모집자 (개인 또는 법인·단체)	성명 또는 법인·단체명	생년월일 또는 법인(사업자)등록번호	
	법인·단체의 대표자 성명		
	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:)		
모집목적			
모집등록금액		모집기간	

완료내용(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)

1. 기부금품

(단위: 원)

연월 (00-00)	1)접수방법	기 부 금	기부물품				기부금품	비고
		금 액	품명	단가	수량	물 품 총 액 (가액)	합계	
								※모집등록 금액 대비 비 율(%)
총계								

2. 모금액의 금융회사별 예치명세

(단위: 원)

금융회사	금액	계좌번호	예금주
합계			

첨부: 기부금을 접수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모집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각 1부

비고: 1) 접수방법은 “온라인(계좌, 정보통신망,ARS 등), 오프라인(현장접수,모금함 등), 기타” 중에서 기재합니다.

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집을 완료했음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모집자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귀하
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

등록번호	모집기간	
모집자 (개인 또는 법인·단체)	성명 또는 법인·단체명	생년월일 또는 법인(사업자)등록번호
	법인·단체의 대표자 성명	
	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:)	
모집목적		
모집등록금액		

1. 기부금품 모집 명세

(단위: 원)

연월 (00-00)	1)접수방법	기 부 금		기부물품			기부금품		비고
		금 액	품명	단가	수량	물 품 총액 (가액)	합계		
									※ 모집등록 금액 대비 비율(%)
총계									

2. 기부금품 사용 명세

(단위: 원)

연월일 (00-00-00)	(대 표)지급처명 (성명/단체명/상호)	2)사업명 /모집비용	3)지출목적(사업내용) /비목(모집비용)	지출액		
				현금	물품	합계
총계						

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	년 월 일
-------------------	-------

첨부:

-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1부(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-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(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
비고:

- 접수방법은 “온라인(계좌,정보통신망,ARS 등), 오프라인(현장접수,모금함 등), 기타” 중에서 기재합니다.
- 기부금품 등록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는 사용계획서 상의 사업명과 모집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- 사업명을 기재하는 경우 지출목적(사업내용)을 기재하고, 모집비용일 경우 아래의 비목을 기재합니다.

* 비목 구분

인건비	임차비	홍보비	세금과공과	소모품비	지급수수료	기타(일반운영비)
-----	-----	-----	-------	------	-------	-----------

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모집자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귀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장부·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) ① 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<u>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5호의2서식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</u> 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	제19조(장부·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) ① ----- ----- <u>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기부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부(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<u>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</u> 에 따른 장부는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으로 한정한다)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5호서식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	⑤ ----- -----

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,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 보고서에 기부금을 접수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.

⑥ (생략)

제20조(회계감사의 의무화 등) ① (생략)

②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,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③ (생략)

----- 별지 제7

호서식-----

⑥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회계감사의 의무화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별지 제8호서식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181